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46호

우편법 시행규칙 제85조제1호가목, 제86조제1항 및 제87조제1항에 따라 고시한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과 감액요건 및 감액범위(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0-40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1년 9월 30일

우정사업본부장

정기간행물의 우편요금 감액대상, 감액요건, 감액범위 등에 관한 고시

1. 우편요금 감액대상

가. 감액대상 우편물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신문법”이라 함)」 제2조제1호 및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잡지법”이라 함)」 제2조제1호(다목 제외)에 의한 동일한 제호의 정기간행물 중 발행 주기를 일간·주간·월간으로 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 주기와 동일하게 발행하여 발송하는 중량과 규격이 같은 요금별납 또는 요금후납 일반우편물

나. 감액제외대상 우편물

1) 신문법 제9조에 의하여 등록하지 않은 정기간행물 및 잡지법 제15조, 제16조에 의하여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정기간행물(이하 “미등록물”이라 함) 중 상품의 선전 및 그에 관한 광고(이하 “광고”라 함)가 앞·뒤표지 포함 전지면의 60% 이상을 초과하는 정기간행물
※ 광고란 상품의 설명, 가격, 판매처 및 구입방법 등을 명시하거나,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하여 상품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을 말한다.

2. 우편요금 감액요건

가. 우편물 정기발송계약의 체결

1) 계약 당사자

가) 신문법 제2조제3호에 의한 “신문사업자”

나) 신문법 제2조제7호에 의한 “발행인”

다) 신문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지사 또는 지국장”

라) 잡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한 “정기간행물사업자”

마) 잡지법 제2조제3호에 의한 “발행인”

바) 잡지법 제2조제5호에 의한 “지사 또는 지국장”

사) 정기간행물의 원활한 보급을 위하여 보급업무를 대행 하는 자(이하 “보급대행인”이라 한다)

※ 보급대행인이란 정기간행물의 보급 및 배포를 위하여 정기간행물의 발행인과 일정한 수수료 지불을 대가로 계약을 통하여 맺은 이해 관계인을 말한다.

2) 계약을 체결할 우체국

가)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직접 배달할 우체국

나) 우편집중국

다) 다만, 우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기간행물은 직접 배달할 우체국 또는 배달할 우체국을 관할하는 5급 이상 공무원이 우체국장으로 배치된 우체국 및 그 배달할 우체국을 수용하는 우편집중국

3) 계약 체결에 필요한 사항

가) 우편물 정기발송 계약신청서, 계약서

나) 정기간행물 등 사업등록증 사본

다) 미등록물은 다음의 발행 실적이 있어야 한다.

(1) 발행 주기와 동일하게 계속해서 계약일 이전 일간 10회 이상, 주간 5회 이상, 월간 3회 이상

라) 수취인 주소, 우편번호, 요금인영 등 우편물의 외부기재 사항이 국내 통상우편물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수취인의 주소는 한글로 표기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신청인이 신문(정기간행물)사업자, 발행인이 아닌 경우

(추가 제출 서류)

- (지사 또는 지국) 그 설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 (보급대행인) 보급대행에 관한 계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사본

4) 계약의 주요내용

가) 우편물의 정기 발송일, 수량

나) 우편물의 제출요건

다) 우편요금의 감액에 관한 사항

라) 계약의 변경·해지 등에 관한 사항

마) 기타 이 고시에서 정한 사항

5) 계약내용의 변경신고

가) 정기간행물의 등록사항 변경과 휴간·정간 등의 사유 발생 또는 정기발송 계약서의 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내용을 준수한 정기간행물은 정기발송일에 발송한 것으로 간주 한다.

6) 계약의 해지

가) 우편물의 정기 발송일에 우편물을 3회(일간은 10회) 이상 계속해서 발송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최근 6개월간(일간은 1개월간) 우편물 발송 횟수가 100분의 80에 미달한 경우

다) “2. 가. 5) 계약 내용의 변경 신고” 기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7) 계약해지 후 재계약의 제한

가) 계약이 해지된 정기간행물의 계약당사자가 당해 정기간행물에 대하여 재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계약해지일로부터 1년(일간신문은 4개월)이 지나야 재계약을 할 수 있다.

(1) 다만, “2. 가. 6)”의 계약 해지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경과 기간의 제한이 없다.

8) 계약체결 우체국의 이관

가) 계약 당사자가 계약 체결 우체국의 변경을 요청할 경우 당초 계약 체결 우체국은 관련서류를 계약 변경 우체국에 이관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 변경 우체국은 “2. 가. 2) 계약을 체결할 우체국”의 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나. 우편물을 제출할 우체국

- 계약을 체결한 우체국(우편집중국 포함)

다. 1회 발송 최소우편물 수

1) (기본감액 대상) 요금별납우편물 100통 이상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50통 이상. 다만, 우편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의 송달대상 우편물은 발송물수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요금별납과 요금후납의 요건에는 적합 하여야 한다.

- 2) (구분감액 대상) 요금별납우편물 2천통 이상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1천통 이상

라. 기본 및 구분 감액을 적용을 위한 일반적 요건

- 1) 우편물에는 본지 또는 부록의 게재내용과 관련된 물건(이하 “부록”이라 함)이나 호외 등을 첨부하거나 제본할 수 있다.

가) 우편엽서, 빈 봉투, 지로용지, 발행인 및 신문(정기간행물)사업자(계약 당사자 포함) 명함을 제본하지 않고 동봉할 경우에는 각각 1매에 한하며, 이를 본지 또는 부록과 함께 제본할 경우에는 수량의 제한이 없다.

나) 부록은 본지의 부록임을 알 수 있도록 본지 및 부록의 표지에 “부록”의 문자를 표시하여야 하며, 호외는 표지에 “호외”의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부록 및 호외임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감액을 받을 수 없다.)

다) 부록은 본지와 별도로 발송시는 감액을 받을 수 없으나, 호외는 본지와 별도로 발송 시 감액을 받을 수 있다.

- 2) 본지, 부록, 호외 등을 포함한 우편물 1통의 총 무게는 1,200g을 초과할 수 없으며, 본지의 내용물(부록, 호외, 기타 동봉물)의 무게가 본지의 무게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 3) 관보는 중량제한과 부록의 매수에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다.

- 4) 우편물을 봉합하여 발송할 경우 우편물의 표면 왼쪽 중간 부분에 “정기간행물”의 문자를 표시하여야 한다.

5) 우편번호 구분

가)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또는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규격우편물은 용기(접수용상자, 우편자루, 종이상자, 파렛 등)에, 규격외우편물은 묶음 또는 용기(우편자루, 종이상자, 파렛 등)에 담아 제출하여야 한다.

다) 1개의 묶음 또는 용기(접수용상자·우편자루·종이상자)에 들어 있는 우편물은 우편번호가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용상자 접수는 상자별 80%미만은 별도 표시하여 접수국에 제출할 수 있다.

6) 우편물 제출형태

가) 묶음 제출(규격외우편물)

- (1) 묶음 1개의 두께는 20cm 이하로 최소 10통 이상이어야 하나, 동일행선지에 여러 개의 묶음을 보낼 때의 자투리우편물과 10통 묶음이 20c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통 이내로 할 수 있다.

- (2) 우편물을 묶을 때에는 호트러지지 않도록 가로 세로 “+” 형태 등으로 견고하게 묶어야 한다.

- (3) 각 묶음에는 정확한 행선지별 우편번호 등을 기재한 표지를 잘 보이도록 앞에 끼워야 한다.

나) 접수용 상자 접수(규격우편물)

- (1) 우정사업본부장이 제공하는 상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2) 접수용상자에는 우편집중국별 또는 배달국별로 분류하여 적재하여야 하며, 접수용 상자당 적재량은 총 용적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 (3) 각 접수용 상자에는 우편번호별 구분 정도(3자리, 6자리) 등을 표시한 국명표를 상자 윗면에 삽입하여야 한다.

다) 우편자루 제출

- (1) 우편물이 취급 중에 호트러지지 않게 묶은 후 우편자루에 넣어야 한다.

- (2) 우편자루 1개의 무게는 최소 6kg 이상 최대 20kg(우편자루 무게 포함) 이하로 한다. 다만, 동일 행선지에 여러 개의 우편자루를 보낼 경우 자투리 우편자루와 1개 우편자루에 우편물 수가 1,000통 이상일 때는 6kg 미만으로 할 수 있다.
- (3) 각 우편자루에는 행선지별 우편번호·접수국명을 기재한 「국명표」를 끼워야 한다.

라) 종이상자(BOX) 제출

- (1) 상자표면에는 상자 속에 들어 있는 우편물의 행선지별 우편번호, 배달국명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 (2) 상자는 골판지 등을 재질로 사용하여 우편물이 운반과정에서 흐트러지거나 변형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3) 동일한 우편물에 대하여는 크기, 재질 등이 동일한 상자를 사용 하여야 한다.

마) 파렛(우정사업본부장 지정 파렛) 제출

- (1) 파렛에는 우편집중국별로 분류하여 적재하여야 하며, 1파렛당 적재량은 총 용적의 최소 50% 이상 최대 100% 이하(파렛 높이 기준)로 한다. 다만, “우편집중국별 파렛 적재”에 의한 구분감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 용적이 80% 이상이어야 한다.
- (2) 파렛에 우편물을 적재할 때에는 우편번호순(규격우편물) 또는 도착우편집중국별 기계구분계획(sorting plan 순)(규격우편물), 집중국(시,구,동)별(규격외우편물)로 정렬하되, 구분·식별을 할 수 있도록 간지(종이 등)를 삽입(우편번호 정렬 시에는 우편번호 앞에서 셋째 자리 단위로 간지 삽입) 하여야 한다. 다만, 대형우편물(가로 360mm, 세로 265mm, 두께 20mm 초과)과 띠지, 반봉투를 사용한 우편물은 묶음 처리 후 적재하여야 한다.

- (3) 각 파렛에는 우편번호별 구분 정도(3자리, 6자리) 등을 표시한 국명표를 부착하여야 한다.
- (4) 우편물의 크기와 중량이 동일하여야 한다. 다만, 접수 물량에 대한 검증이 가능한 경우 크기와 중량이 다른 우편물도 함께 적재할 수 있다.
- (5) 우편물을 파렛 제출 시에는 파렛에 공간이 최소화되도록 가차 없이 적재하여야 한다.

바) 접수목록표 제출

- (1) 우편물의 종류, 구분 정도, 묶음 및 용기(우편자루, 상자, 파렛)수, 우편물 수 등을 기재한 접수목록표를 우편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사) 우편물 내용의 신고와 개피 요구

- (1) 계약체결 우체국(우편집중국)이 계약대상 우편물을 접수할 때에는 우편법 제27조에 의거 우편물 내용물의 종류와 성질에 대하여 발송인에게 신고 받을 수 있으며, 계약 내용의 정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송인에게 그 우편물의 개봉을 요구할 수 있다.

마. 구분 감액을 적용을 위한 제출요건

1) 우편집중국

가)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 (1) 「올바른 우편번호사용(바코드인쇄)」 감액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우편집중국에서 인증한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률 인증서”를 우편물과 함께 우편집중국에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률 정도에 따라 감액률을 적용한다.
- (2) (「올바른 우편번호사용(바코드인쇄)」인증서 유효기간) 발급일로부터 6개월

- (3) 1회성으로 발송하는 우편번호바코드인쇄우편물 중 사전 고객DB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수작업에 의한 올바른 우편번호사용률을 검사하여 감액률을 적용한다.

나) 우편집중국별 파렛 적재

- (1) 1개의 파렛에는 단일 우편집중국에서 처리할 우편물만 적재하여야 한다.
- (2) 동일 발송인은 중량과 규격이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우편물을 동일 파렛에 적재하여 제출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우편물 종류별 접수 물량 확인이 가능하도록 적재하여야 한다.
- (3) 묶음 또는 용기(우편자루, 상자)에 담아 파렛 적재할 경우에는 “2. 라. 6)우편물 제출형태”의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 (4) 기타 제출 방법은 우편물 제출 형태의 파렛 제출 방법을 준용하여야 한다.

다) 순로구분기별 또는 집배원별 접수

- (1) 우편번호 앞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을 전제로 하여 순로구분기가 설치된 관서는 호기별로, 1대 또는 미설치 관서는 집배원별로 구분하여 접수하여야 한다.(순로구분기 설치 관서 현행자료는 홈페이지 게시)

라) 상자접수 감액을 받고자 하는 경우는 “2. 라. 6). 나)”, “2. 라. 6). 라)”항과 같음

마) 집중국(시,구,동)별 적재 접수

- (1) 규격외 우편물은 파렛에 적재시 집중국별로 적재하여 접수하여야 한다.(집중국 관할지역은 홈페이지 게시)
- (2) 규격외 우편물 제출은 “2. 라. 6), 가)”항과 같음

2) 직접 배달국

가) 우편번호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하여 묶음 또는 상자 제출 형태의 방법을 준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1), 2)”항 해당 우편물은 요금감액요건 “2. 다. 라.”의 내용이 기본적으로 충족 되어야 한다.

※ 우편번호 여섯째 자리까지 구분은 올바른 우편번호(집배원별 우편번호) 사용을 의미함

※ 올바른 우편번호(집배원별 우편번호)란 주소에 맞는 우편번호를 찾을 때, 우정사업본부가 고시하는 우편번호에서 다량배달처(아파트·빌딩·기관·회사), 번지, 리 단위 및 행정동 또는 법정동 순서로 찾아 가장 먼저 해당하는 우편번호이며, 대표동 우편번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우편요금 감액범위(감액률)

가. 기본 감액률

요금감액대상		요	비
종별	간별	금 감액률	고
신 문	일간	70%	- 주 3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85%	- 토요일자 발행 조간신문 및 금요일자 발행 석간신문 중 다음주 월요일에 배달하는 일간신문(주5회 이상 발행)
신 문	주간	66%	- 월 4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단, 월 4회 미만 발행하여 발송하는 격주간 신문 등은 잡지(월간) 감액률 적용
잡 지	월간	54%	- 월 1회 이상 발행하여 발송하는 정기간행물
잡지외간행물	일간/주간 /월간	44%	- 잡지법 제2조제1호나목·라목에 의한 정기간행물
미등록물			- 신문법 제9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제1호에 의한 신문 - 잡지법 제15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에 의한 잡지 - 잡지법 제16조제1항 단서조항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제2항제1호에 의한 정보간행물, 기타간행물

※ 신문법 제9조 및 잡지법 제15조, 제16조에 의거 등록관청에 등록 및 신고하지 아니하는 정기간행물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정기간행물은 그 간별에 따라 신문 또는 잡지에 해당하는 감액률을 적용한다.

나. 구분 감액률(우편물 접수방법에 따른 감액률)

구분	우 편 물 접수내역		접수 국 기준	<u>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 인쇄 (95% 이상)</u>	집중 국별 파렛 적재	규격우편물		규격외우편물		최고
						순로구분 기별 또는 집배원별	상 자 접 수	집 배 원 별	집중국별 (시,구,동))적재접 수	
규격우편물	3자리	우편집중국	2%	<u>2%</u>	2%		<u>1%</u>			7%
		우편집중국 (배달국 관할)	4%	<u>2%</u>			<u>1%</u>			7%
	6자리	우편집중국	2%	<u>2%</u>	2%	<u>3%</u>	<u>1%</u>			10%
		우편집중국 (배달국 관할)	4%	<u>2%</u>		<u>3%</u>	<u>1%</u>			10%
	6자리	직접배달국 (자국접수자국배달)	9%				<u>1%</u>			10%
규격외우편물	3자리	우편집중국	2%	<u>2%</u>	2%				<u>1%</u>	7%
		우편집중국 (배달국 관할)	4%	<u>2%</u>					<u>1%</u>	7%
	6자리	우편집중국	2%	<u>2%</u>	2%			<u>3%</u>	<u>1%</u>	10%
		우편집중국 (배달국 관할)	4%	<u>2%</u>				<u>3%</u>	<u>1%</u>	10%
	6자리	직접배달국 (자국접수자국배달)	9%						<u>1%</u>	10%

※ 상자접수 감액률은 접수용 상자, 종이상자, 파렛 접수도 동일하게 적용

3) ‘올바른 우편번호 사용 및 바코드인쇄’ 감액률 적용 제외 요건

가) 우편물의 크기가 가로 360mm, 높이 265mm, 두께 20mm를 초과하는 경우

나) 띠지, 반봉투를 사용하는 경우

다. 감액률 상한기준

1) 기본 감액률과 구분 감액률 합계가 신문(일간) 75%, 신문(주간)

70%, 잡지 58%, 잡지외간행물/미등록물 48%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감액률을 적용한다.

2) 다만, 토요일자 발행 조간신문 및 금요일자 발행 석간신문 중 다음주 월요일에 배달하는 일간신문(주 5회 이상 발행)은 상한기준의 예외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201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며, 우정사업본부 고시 제2011-41호 (2011.9.30.)는 폐지한다.